

# 2022년 7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(파리지사)

## I |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### 1. 주요 변경사항

#### 독일 포장재 시행령(VerpackG) 개정안 단계적 시행

- EU 국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플라스틱 사용 감소 지침에 따라 국가 자체적으로도 관련 규정을 마련. 윤리적 소비행동 영역의 선두국가인 독일도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제품 생산 시 포장 낭비로 인한 환경적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생산자책임을 부여. 또한, 독일 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 시행령(VerpackG)을 제정하고, 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중에 있음
- 2021년 7월 3일 관련 시행령의 전면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, 해당 개정안은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도 포함
- 이번 7월 개정은 1) 기존에 면제되던 특정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, 특히 2)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성장한 전자상거래 및 주문처리 서비스 제공업체(전자상거래 배송대행사)에도 포장재 시행령 관련 의무 이행의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

#### 1) 예외 없이 모든 포장 제품에 등록 의무 부여

-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독일 중앙 포장재 등재재단(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, ZSVR)에 등록 의무가 없었던 포장 제품까지 등록 의무 확대 적용. 지금까지 독일 시장 내에서 포장된 제품을 생산, 납품하는 첫 유통업자(제조자)는, ZSVR의 포장 등록 시스템인 LUCID에 포장재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신고서 제출과 함께 포장 등록 대상이었음. 이번에 발효된 개정안에 따라 포장

재 등록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, 배송 포장재, 일회용 음료 포장재, 라벨, 완충 포장재 제조자에까지 등록 의무가 확대

- 즉, 이번 적용은 가)포장재 종류에 상관없이 포장 제품을 나)상업적 목적으로 다)독일 시장에 납품하거나 포장재를 독일로 수입한 라)첫 유통업체(특히 소매나 배송 포장재)의 경우 등록 의무가 있음
- 한편 만약 제품의 포장재가 전형적으로 사설 최종소비자(호텔, 식당, 문화시설 등)에게 폐기물로 남겨지는 경우, 이 포장재는 시스템\* 참여 대상이 됨

\* 시스템 또는 듀얼 시스템(dual system): 체계적인 포장재 회수, 분류, 재활용을 위해 관할 주 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(서비스 제공 기업 리스트: <https://www.verpackungsregister.org/en/information-orientation/instructions-further-information/systems-overview#c3519>)

- 해당 주체가 등록/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독일 시장 내에서 해당 제조사의 포장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, 200,000€ 이상의 벌금에 이를 수 있음

※ 붙임자료: ① 포장재 등록과 시스템 참여 관련한 3단계 체크 리스트 (pdf)  
② 시스템 참여 의무 대상 관련 (pdf)

## 2) 전자상거래 유통업체 및 주문처리 서비스 제공업체(전자상거래 배송대행사) 대상 포장재 등록 체크 의무 강화

-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특별히 관련 유통업체들에도 포장재 시행령의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
- 따라서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유통업체는 가)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포장 제품의 제조사가 LUCID 시스템 내 포장재 등록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, 나)시스템 참여 대상이 되는 포장재의 참여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음. 만약 제조사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됨

- 또한, 피자박스, 테이크아웃 컵 등 공급업체 또는 도매업체로부터 사전 참여로 포장 서비스만 구매하는 업체는 사전 구매로 재활용 포장 비용을 선지불했어도 7월 1일부터 등록을 해야 함

## □ 시사점

- 독일 내 제품 수입업체는 첫 유통업체, 즉 제조자로 취급되어 이번 시행령에 따라 등록 의무 주체가 됨. 따라서 독일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에게 **각 제품의 포장재 관련 구체적인 정보**(예를 들어 뚜껑, 포장지, 페트병 각각의 포장재 종류, 재활용 원료의 함유량 등) 제공이 매우 중요하게 됨
-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매하기 전 두 가지 등록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이 필요

※ 출처 및 참고사이트: 독일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(ZSVR) 사이트, 2022-07-01, <https://www.verpackungsregister.org/en/information-orientation/news-press/press-releases-news/detail/news/statutory-amendments-enter-into-force-fostering-transparency-and-fairness>.

||

## 통관 및 검역 관련 주의사항

### 1. 통관 동향 등 이슈

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, 라벨링, 포장 관련 EU 위원회 규정([\(EC\) No 1272/2008](#))에 지정된 유해 물질 ‘이프로디온(Iprodione)’의 MRL(잔류 농약 최대 허용 기준) 준수 요망

- EU 위원회 규정 No 1272/2008의 경우 2006년부터 물질(substance)이나 혼합물(mixture)로부터 인류의 보건, 환경 보호의 목적과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유럽 역내에서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규정

- 이 규정은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기준을 유럽 역내에서 일치시키고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의 라벨링과 포장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
- 이에 따라 물질 제조자, 수입업체, 이용자(산업적으로나 전문적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)는 유럽 역내 시장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 물질과 혼합물에 대하여 분류할 의무가 있고, 공급자는 해당 물질을 포장하고 라벨링할 의무가 있음. 또한 물질 제조업자, 수입업체는 분류 및 라벨링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도 발생
- 그중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은 규정 (EC) No 1272/2008의 부속서 VI, 세 번째 파트(Annex VI, Part 3, Table 3.1)에 분류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음. 살균제의 한 종류인 이프로디온의 경우가 리스트에 속한 유해 물질로 지정. 그 이유는 인체 암 유발 가능성 유해 물질 2번째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고,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보기 때문
- 게다가 농약, 중금속 등과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의 MRL를 정해놓은 EU 위원회 규정 (EC) No 396/2005의 부속서 V에도 마찬가지로 이프로디온의 MRL이 정해져 있으며, 그 수치는 품목에 따라 0.01mg/kg - 0.05mg/kg 사이로 규정(붙임 자료③ 참고)

## 2. 시사점

- 인스턴트 라면 품목은 대부분 에틸렌옥사이드(EO) MRL 초과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빈번히 있었으나, 이번 7월 통관 거부된 사례를 볼 때 이프로디온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이 부분 또한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임

## 1. 통관거부사례(7월)

- 간편식(인스턴트 라면), Ready meal (2022.07.08.)
    - 통관번호 2022.4010
    - 야채·버섯 스프에서 이프로디온(iprodione) 성분 0.25 mg/kg-ppm 검출  
(기존 MRL : 0.01 mg/kg-ppm)
    - 독일에서 폐기 처리 및 재발송 예정
- 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## 2. 시사점

- 특이사항 없음